

기업지배구조헌장

전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투자파트너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아래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상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고 충분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자기거래, 경영간섭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법인이사, 감독이사, 이사회

제4조 이사회 구성 및 법인이사, 감독이사 선임 등

- ①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법인이사 1인 및 감독이사 2인 이상을 두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를 법인이사로 선임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법인이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정관에 따라 선임하여 그 직무를 위임한 법인이사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 ④ 감독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법인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제6조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정관 등에 규정하고, 『상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④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한다.
- ⑤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⑥ 이사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내 설치될 위원회의 종류, 권한,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③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8조 이사의 책임과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항

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는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보상

- ① 법인이사의 보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한 보수 이외에 별도의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또한, 공시규정 등에 따라 개별 경영진의 보수는 세부적으로 공시 되어야 한다.
- ③ 감독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10조 감독이사

- ①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감독이사를 두며,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동법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1. 회사의 발기인
 2. 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회사의 회계감사인
- ③ 감독이사는 이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감독이사는 감사에 관하여 내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의견을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독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감사인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필요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정기적 공시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④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독이사에게 보고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2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고객, 임직원,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 큰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③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④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두루 보호한다. 한편 회사는 자산편입과 운영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3조 공시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제14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헌장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